

2024년 광산구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사업 공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광산구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4. 5. 9.(목) ~ 5. 30.(목) 18:00까지(22일간)

※ 접수기간 : 2024. 5. 9.(목) ~ 5. 30.(목) 18:00까지

나. 신청대상 : 분야별 조건 모두 충족 (①, ② 사업분야 중 택 1)

※ 자격요건 기준 일에 대해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공고일 기준임(공통)

①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사업 분야

- ① 광산구 기업체로 사업자 등록(공장등록) 후 5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 ② 연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③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포함)

②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사업 분야

- ① 광산구 기업체로 사업자 등록(공장등록) 후 5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 ② 연 매출액이 15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6개월 이상) 외국인노동자* 5인 이상 고용 유지 기업

※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에 따른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노동자

- ④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포함)

다.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7백만원 한도 ※ 총사업비의 자부담 10% 이상 별도(부가세 포함)

①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사업 분야

- 작업환경, 근로환경, 작업안전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지원

작업 환경	- 작업 공간(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 적재대, 작업대, 도장공사, 소음방지시설, LED 등(작업공간만 해당)
근로 환경	- 노동자 작업복 세탁물 보관 공간 설치,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공간 설치 및 개보수
작업 안전	- 분진·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환기시설 - 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공사,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전기공사 등

* 비품(물품) 구입비용, 작업공간(근로환경) 이외 장소의 설치 및 개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우대사항 »

- 대우위니아 (1차·2차)협력업체
-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기업(3년 이내), 여성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 최근 5년 이내 광주광역시(5개 자치구 포함)로부터 고용환경개선 관련 자금 수혜를 받은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무허가 건물 및 신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기업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기업
- 자부담(노동환경 개선사업 총 비용의 최소 10%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4대보험 미가입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고발, 불법행위, 노사분규, 산업재해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사업 분야

- 외국인노동자가 이용하는 노동환경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지원

주거시설	- 외국인노동자 거주 기숙사 등 설치 및 개·보수
근로환경	- 외국인노동자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공간 설치 및 개·보수

* 비품(물품) 구입비용, 작업공간(근로환경) 이외 장소의 설치 및 개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우대사항 »

- 대우위니아 (1차·2차)협력업체
-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기업(3년 이내), 여성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 지원제외대상 >>

- 최근 5년 이내 광주광역시(5개 자치구 포함)로부터 고용환경개선 관련 자금 수혜를 받은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무허가 건물, 가건물 및 신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기업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기업
- 자부담(노동환경 개선사업 총 비용의 최소 10%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4대보험 미가입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고발, 불법행위, 노사분규, 산업재해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2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5. 9.(목) ~ 5. 30.(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인정)

다. 제 출 처 : 광산구청 지속성장일자리과 기업투자지원팀(3층)

-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송정동)

※ 우편 발송 후 유선 확인 必

라. 제출서류(신청서식 다운로드 -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사업검색)

①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사업

- ① 신청서 1부
- ② 사업계획서 1부
- ③ 확인서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건축물대장 1부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고용인원 및 여성근로자 확인용
- ⑦ 재무제표(최근) 원본 1부 *매출확인용
- ⑧ 고용보험가입증명서(23년 3월 말, 24년 3월 말) 1부
-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확인
- ⑩ 노동환경 개선 사업비 산출 확인용 견적 내역서(내역서 및 견적서) 1부
- ⑪ 자부담 확약서 1부
- ⑫ 보조금 반환 확약서 1부
- ⑬ 기업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⑭ 건물주(임대자) 사업 참여 동의서 1부(임차건물 소재 기업일 경우)
- ⑮ 우대지원 확인자료(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청년친화기업인증 등)

②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사업

- ① 신청서 1부
- ② 사업계획서 1부
- ③ 확인서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건축물대장 1부
- ⑥ 재무제표(최근) 원본 1부 *매출확인용
-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외국인노동자 고용인원 확인용
- ⑧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최근 5년) 1부 *외국인노동자 고용기간 확인용
- ⑨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만) 각 1부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확인용
- 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확인
- ⑪ 외국인 노동환경 개선 사업비 산출 확인용 견적 내역서(내역서 및 견적서) 1부
- ⑫ 자부담 협약서 1부
- ⑬ 보조금 반환 협약서 1부
- ⑭ 기업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⑮ 건물주(임대자) 사업 참여 동의서 1부(임차건물 소재 기업일 경우)
- ⑯ 우대지원 확인자료(우수중소기업인상,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여성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인증서 등)

※ 고용보험가입증명서(23년 4월말, 24년 현재 기준) 각 1부

- 출력방법 : 고용보험 <http://www.ei.go.kr>

(기업서비스-조회-고용보험가입자목록 *엑셀 출력 금지)

※ 기타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사업 심사표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는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함.

3 심사 및 선정

가.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심사표에 따른 심의 후 고득점 순위로 선정
- 사업대상 기업 결정 이후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취소 시, 차순위 기업으로 추가 선정

나. 심사방법

구분	방법	내용	비고
1차	서류심사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해당 여부 검토 - 전체 서류심사 결격 유무 및 사업에 관계된 전반적인 사항 검토	
2차	현지실사	-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시설물 노후정도 등 현장확인	기업주치의 센터 연계
3차	선정심사	- 참여 기업의 사업계획서 검토·평가 - 사업방향과의 일치성 여부 - 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 최종평가	

4 추진일정

가. 공고 및 접수	: 2024. 5. 9. ~ 5. 30.
나.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	: 2024. 6.
다. 사업 대상기업 선정 및 통보	: 2024. 7.
라. 노동환경개선사업 수행(기업)	: 2024. 7. ~ 9.
마. 사업 보조금 지급(사업종료 후)	: 2024. 7. ~ 9.
바. 사업 보조금 정산(기업)	: 2024. 10.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6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마. 공사비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전기공사업 면허, 실내건설업 면허 등)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업협회(www.kosca.or.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바. 사업비 20백만원(VAT제외) 이상인 공사, 물품의 구매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공고 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계약 체결추진
- ※ 단,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제조, 구매용역 : 시공업체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에 해당해야 함.(여성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 전체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속성장일자리과 기업투자지원팀(☎960-3877), 노동지원팀(☎960-84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